개정안 2026.10.22. (제 1 차 대의원대회)

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 규약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·사무소)

① 이 노동조합은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업장 내에 두며,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하거나 별도 사무공간을 둘 수 있다.

제 2 조(상급단체)

조합은 전국지방공기업연맹에 가입한다.

제 3 조(목적)

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, 고용안정, 복지증진 및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

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교섭·노동쟁의,
근로조건·고용안정·산업안전보건·복지·교육·홍보·조직확대·법률지원·상호부조 사업과
임금·경영·노무·노동정책에 관한 조사·연구·통계·제도개선, 성평등·일가정 양립 및 취약·소수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.

제 5 조(법인)

조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 2 장 조합원

제 6 조(구성 및 가입)

① 조합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.

②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가입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직종·직급·부서·사업장·고용형태 또는 종전 소속 노동조합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관계 법령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.

제 7 조(탈퇴·재가입)

① 조합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가 조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일반 탈퇴자는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가입할 수 있다. 다만 제명된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한다.

③ 탈퇴 전 확정된 금전관계 또는 징계의 효력은 해당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8 조(자격상실 및 해고자)

① 조합원은 탈퇴·제명·사망·퇴직 등으로 조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 법령상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.

②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처분을 받은 조합원의 자격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,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조합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 9 조(조합원명부 및 정보보호)

조합은 조합원 자격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원명부를 작성·관리하고, 조합원 개인정보와 회계·징계·선거자료 등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조합원의 권리)

① 조합원은 발언·의결·선거·피선거권, 조합활동 참여권, 균등대우권, 조합정보 확인권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·재심청구권을 가진다.

② 조합원은 관계 규정과 정당한 기준에 따라 조합의 복지·교육·문화사업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 11 조(조합원의 의무)

조합원은 관계 법령,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조합비와 적법하게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하고 조합의 재산과 공동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권리제한)

① 조합원의 권리는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다.

②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 개월 이상 계속 미납한 경우 납부를 최고한 후 제규정에 따라 권리제한 또는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.

③ 권리정지 징계가 확정된 기간에는 그 결정 범위에서 선거권·피선거권 등 조합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13 조(조합활동 희생자 등의 구제)

조합의 적법한 의결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조합원 또는 관계자가 신분상·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법률·생계·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세부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 장 기관·총회 및 대의원회

제 14 조(기관)

조합에는 총회, 대의원회, 상무집행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15 조(총회 및 대의원회의 지위)

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.

②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며 관계 법령과 이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한다.

③ 전체 조합원 직접투표로 정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갈음할 수 없다.

제 16 조(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갈음)

① 조합은 매년 1 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
② 교대근무·사업장 분산, 재난·감염병, 장소 확보 곤란 등 집합총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관계 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

③ 제 2 항의 경우 그 사유와 주요 의결·보고사항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의견수렴을 병행한다.

④ 법령 또는 이 규약이 전체 조합원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를 요구하는 사항은 갈음할 수 없다.

제 17 조(임시총회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며, 재적 조합원 3 분의 1 이상이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제 18 조(총회 소집 및 총투표)

① 총회는 원칙적으로 7 일 전까지 일시·장소·안건을 공고한다.

② 관계 법령과 이 규약이 허용하는 경우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가 필요한 사항은 그 요건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대의원 선거구 및 정수)

① 대의원 선거구는 운수직, 업무직(복지직 포함), 일반직의 직군별 선거구를 기본으로 한다.

② 대의원은 각 직군별 조합원 20 명당 1 명으로 하고, 20 으로 나눈 나머지가 11 명 이상이면 해당 직군에 1 명을 추가한다.

③ 필요한 경우 같은 직군 안에서 세부 선거구를 둘 수 있으며, 직군별 총정수 범위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대의원 0 명 선거구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 선거구와 통합한다.

④ 정수 산정 기준일은 선거공고일로 하며 선거구와 정수는 대의원회가 확정한다.

제 20 조(대의원 선출·임기·결원)

① 대의원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② 임기는 3 년이며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결원 시 잔여임기가 6 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, 6 개월 미만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21 조(대의원회 소집)

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 회 이상 개최한다.

②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.

제 22 조(대의원회의 기능)

대의원회는 관계 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규약·제규정, 사업계획, 예산·결산, 재산·기금, 사무국장 인준, 교섭 중요사항, 특별부과금, 상급단체, 제명·복권 및 총회 부의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 23 조(회의의 성립과 의결)

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의결기관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는 부결로 한다.

② 규약의 제정·변경, 임원 해임, 합병·분할·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등 관계 법령상 특별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4 조(투표방식 및 조직존립사항)

① 규약의 제정·변경, 위원장·부위원장·감사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, 임원 해임,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은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한다.

② 합병·분할·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.

제 25 조(회의운영)

① 특정 개인에 관한 징계·재심·복권 등을 심의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의결기관에서 그 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② 총회·대의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③ 본인확인, 의견진술, 의결권 행사 및 필요한 비밀성이 확보되는 경우 전자회의·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 4 장 임원 및 집행조직

제 26 조(임원)

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2 명으로 하며, 감사위원장은 독립된 감사기관의 장으로 한다. 사무국장과 부서장은 집행간부로 한다.

제 27 조(임원의 자격·임기)

① 위원장 후보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계속 2 년 이상, 부위원장 후보자는 1 년 이상 가입한 조합원이어야 하며 종전 양 노동조합의 계속 가입기간을 합산한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2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연속하여 3 회의 임기를 마친 자는 바로 다음 임기의 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없으며, 한 임기가 경과한 후 다시 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.

④ 부위원장 및 그 밖의 임원에 대해서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

⑤ 부위원장 또는 그 밖의 직책으로 재임한 기간은 위원장의 연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의결기관 소집, 단체교섭·단체협약 체결 및 규약·의결사항의 집행을 담당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분장업무를 수행하며, 부위원장 중 1 명을 상임부위원장으로 한다.

제 29 조(위원장·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장 선거)

① 위원장 1 명, 부위원장 2 명 및 감사위원장 1 명은 각각 독립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전체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.

② 각 선거는 독립하여 실시하되 같은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, 특정 후보자의 사퇴·사망·자격상실 또는 등록무효는 다른 후보자의 후보자격이나 다른 직위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장 선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순위 상위 2 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, 단독후보도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④ 부위원장은 2 명을 선출한다. 각 후보자는 독립하여 입후보하며, 조합원은 선출정수인 2 명의 범위에서 투표할 수 있다. 당선기준과 동점자 처리 등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⑤ 감사위원장은 1 명을 선출한다. 당선기준은 위원장 선거의 기준을 준용한다.

⑥ 차기 위원장·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장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임기만료 전 60 일 이내에 실시한다.

제 30 조(결원 및 직무대행)

① 위원장 결원 시 잔여임기가 6 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, 6 개월 미만이면 직무대행자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 유고 시 상임부위원장, 다른 부위원장 순으로 대행하며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의원회가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.

③ 부위원장 결원 시 잔여임기가 6 개월 이상이면 해당 결원 직위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잔여임기가 6 개월 미만이면 대의원회는 조직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감사위원장 결원 시 잔여임기가 6 개월 이상이면 전체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, 6 개월 미만이면 감사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여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 31 조(사무인계)

임기가 종료되거나 직을 상실한 임원·집행간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임자의 직무개시일부터 7 일 이내에 담당 재산·문서·직인·금융 및 전자계정·인증수단·단체협약·회의록·소송 및 교섭자료·비품·업무현황 등을 목록화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중요 자료를 은닉·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32 조(탄핵)

① 임원이 관계 법령·규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조합재산 횡령·유용, 중대한 권한남용 또는 선거·회계·교섭 관련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탄핵할 수 있다.

② 탄핵안은 재적 조합원 4 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구체적 사실과 근거를 명시하여 발의한다.

③ 대상자에게 사전통지, 자료열람, 소명 및 증거제출 기회를 보장한다.

④ 해임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3 조(탄핵 중 임시 직무정지)

탄핵발의만으로 직무가 자동 정지되지 아니한다. 다만 횡령·유용, 중요자료 파기·변조, 대표권의 중대한 남용 등으로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투표 결과 확정 시까지 임시 직무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.

제 34 조(상무집행위원회)

①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국장 및 각 부서장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감사위원은 의결위원이 될 수 없다.

② 총회·대의원회 의결사항 집행, 사업·예산안 작성, 교섭전략, 법률대응, 표창·일반징계, 부서운영 등 일상적 조합운영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한다.

제 35 조(사무국장 및 부서)

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일상업무, 문서·회계·조합원명부 및 부서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조합은 필요한 부서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조직·업무는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 5 장 선거관리

제 36 조(선거관리위원회)

① 위원장·부위원장·감사위원장·대의원 선거 및 임원 해임투표 등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3 명 이상 5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,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37 조(선거관리)

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, 선거인명부, 후보등록·자격심사, 선거운동, 투·개표, 당선결정, 이의신청, 재투표·재선거 및 선거자료 보존 등을 담당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.

제 38 조(중립 및 세부규정)

후보자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자는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그 밖의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

제 39 조(단체교섭 및 체결)

①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와 성실히 교섭하며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.

②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대상자·교섭사항·권한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.

제 40 조(교섭안 및 교섭위원)

① 교섭요구안은 조합원·대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검토·조정하고 주요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구성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직군의 대표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.

제 41 조(교섭과정의 의견수렴)

임금체계, 근로시간, 고용안정, 복리후생 축소 등 중대한 사항은 최종합의 전에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. 다만 이를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사후승인제로 운영하지 아니한다.

제 42 조(단체협약의 관리)

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주요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리며 조합은 협약을 보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.

제 43 조(노동쟁의 및 쟁의행위)

① 조합은 단체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은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② 쟁의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투표대상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와 법정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투표대상과 조합원 수 산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제 44 조(쟁의투표의 공개·보존)

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투표대상자·투표자·찬성·반대·무효표 수와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투표자명부·투표용지 등 자료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보존하며 적법한 열람요구에 응한다.

제 45 조(쟁의대책 및 기금)

쟁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기금을 특별회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중대한 기금 인출은 대의원회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상무집행위원회 의결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제 46 조(교섭대표노동조합)

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참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의견수렴·정보공유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장 재정 및 감사

제 47 조(재정원칙 및 회계연도·수입·예산·지출) **2026.10.22. 개정**

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비·특별부과금 및 기타 적법한 수입으로 충당하고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한다.

②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하며 일반회계와 필요한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.

③ 판공비, 임원·대의원 활동비, 회계감사 활동비, 조합원 복지지원비, 업무추진비 및 기타 운영경비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예산 및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·집행한다.

④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 범위에서 계속사업·법정 또는 계약상 의무경비·필수 운영경비에 한하여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
⑤ 조합비는 매월 급여공제를 원칙으로 하되, 급여공제가 어려운 경우 조합 명의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. 특별부과금은 대의원회가 목적·금액·대상·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의결한다.

⑥ 조합비는 운수직 월 30,000 원, 일반직 및 업무직 월 20,000 원으로 한다.

제 51 조(결산 및 자산)

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회 승인을 받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. 주요 자산의 취득·처분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고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한다.

제 52 조(감사위원회)

① 조합의 재정과 업무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.

② 감사위원장 1 명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
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3 명 이상 5 명 이하를 지명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. 감사위원의 임기는 감사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감사위원은 관계 법령상 회계감사원의 역할을 수행하며,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회계·감사 경험 또는 관련 교육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수 있다.

⑤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을 지명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대의원회와 조합원에게 공개한다.

제 53 조(감사위원의 독립성)

위원장·부위원장, 사무국장, 회계업무 직접 담당자 및 감사 독립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·회피하며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 54 조(감사)

① 감사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6 개월에 1 회 이상 모든 재원·용도 및 회계상황을 감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다.

② 필요한 경우 수시·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장부·증빙·계좌·자산·전자자료의 열람·복사, 자료제출·설명·현장확인 및 시정·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.

③ 감사결과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.

제 55 조(제보자 보호)

조합원은 구체적 사실 또는 자료를 근거로 감사요청이나 비위제보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 56 조(재정·감사 세부규정)

수입·지출·자산·기금·복지비·업무추진비 및 감사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계규정·감사규정·복지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 장 표창 및 징계

제 57 조(표창)

조합 발전과 조합원 권익향상에 기여한 조합원 또는 관계자에게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.

제 58 조(징계의 원칙과 사유)

① 징계는 관계 법령과 규약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비례원칙, 사전통지, 소명권 및 재심권을 보장한다.

② 규약의 중대한 위반, 조합재산 횡령·유용·고의훼손, 중요자료의 위조·변조·은닉, 선거부정, 폭행·협박에 의한 조합활동 방해,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개인정보·보호자료의 중대한 유출 등 조합의 정상운영과 공동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.

③ 정당한 비판·반대의견, 적법한 이의·감사·탄핵 절차 이용 또는 다른 노동조합 가입·활동 사실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59 조(징계종류 및 기관)

① 징계는 경고, 기간을 정한 권리정지 및 제명으로 하고 경고 누적만으로 자동 중징계하지 아니한다.

② 경고·권리정지는 상무집행위원회가 의결하고 제명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 후 대의원회가 최종 승인한다.

제 60 조(징계절차)

① 위원장, 상무집행위원 3 분의 1 이상, 감사위원회 또는 재적 대의원 5 분의 1 이상이 구체적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여 징계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대상자에게 원칙적으로 심의일 7 일 전까지 사유·적용규정·심의일시 및 소명방법을 통지하고 자료열람·서면 또는 구두소명·증거제출 기회를 보장한다.

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고 대상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 61 조(징계의결 및 제명)

① 경고·권리정지는 재적 상무집행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제명안은 재적 상무집행위원 3 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, 대의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한다.

제 62 조(결정·재심·복권)

① 징계결정은 인정사실·적용규정·내용·주요 이유 및 불복방법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.

② 경고·권리정지는 통보일부터 14 일 이내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제명은 대의원회 승인으로 확정하되 중대한 절차위반 또는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 14 일 이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명자의 복권은 상무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가 결정한다.

제 63 조(상벌규정)

표창·징계·재심·복권의 세부절차는 이 규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벌규정으로 정한다.

제 9 장 합병·분할·조직형태 변경 및 해산

제 64 조(합병·분할·조직형태 변경)

① 합병·분할·조직형태 변경은 그 목적, 방법, 조합원 지위, 자산·채무, 단체협약 및 주요 권리·의무 처리방안을 조합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해당 사항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.

제 65 조(해산)

조합은 규약상 해산사유, 합병·분할로 인한 소멸, 적법한 해산결의 또는 관계 법령상 사유로 해산하며, 해산결의는 전체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한다. 대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 필요한 신고를 한다.

제 66 조(청산 및 잔여재산)

해산 시 3 명 이상 7 명 이하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산·부채·채권·채무·계약을 정리한다. 해산을 의결할 때 잔여재산의 귀속원칙을 함께 정하고 청산위원회는 그 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10 장 보칙

제 67 조(제규정)

조합은 선거관리·회계·감사·상벌·복지·회의·조직운영 등 필요한 제규정을 둘 수 있으며 제규정은 이 규약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 68 조(규약해석)

일상적인 규약해석은 상무집행위원회가 하되 중대한 이견이 있거나 조합원의 권리·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의원회가 최종 해석한다.

제 69 조(전자문서·전자투표)

본인확인, 1 인 1 표, 기록의 진정성·정확성·비밀성 및 사후검증이 확보되는 경우 전자문서·전자회의·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 70 조(문서보존)

규약·제규정, 회의록, 단체협약, 회계·감사·선거·쟁의투표 자료, 조합원명부, 자산·계약자료 등은 관계 법령과 제규정이 정한 기간 보존한다.

제 71 조(효력순위 및 준용)

조합운영에는 관계 법령, 이 규약, 적법하게 제정된 제규정, 총회·대의원회의 개별 의결,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 및 집행기준 순으로 적용하며,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의 일반원칙에 따른다.

제 72 조(규약개정)

규약의 제정·변경은 관계 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의결정족수 및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 방식에 따른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 및 종전 규정)

이 규약은 2026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 종전 규약·운영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약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인정한다.

제 2 조(조합원 지위 및 가입기간)

통합 직전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지위를 승계하고, 종전 노동조합에서 계속 유지한 가입기간은 조합활동 경력 등에 합산한다.

제 3 조(재산·회계 및 권리의무 승계)

양 노동조합의 재산·채권·채무·계약은 각자 결산한 후 단일회계로 통합한다. 기준일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조(종전 의결·단체협약 및 교섭관계)

종전 의결·사업·단체협약·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및 노동관계상 권리·의무는 이 규약과 관계 법령 및 합병의 법적 효과에 따라 승계·처리한다.

제 5 조(조합원 차별금지)

과거 탈퇴·재가입 또는 다른 노동조합 가입·활동 사실만을 이유로 통합조합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